성과연봉제 운영규칙

제정 2011. 1. 1.

개정 2016. 5.27.

개정 2016. 7.21.

개정 2017. 9. 8.

개정 2021, 12, 28,

개정 2023. 12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간부직) <삭제 2021. 12. 28.>

제4조(기본연봉) ①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 ② 기본연봉은 근무성적이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16. 5. 27., 2017. 9. 8.>
- ③ <삭제 2021. 12. 28.>
- 제5조(업적연봉) ①직원의 업적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6. 5. 27., 2017. 9. 8.>
 - ②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이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16. 5. 27., 2017. 9. 8.>
 - ③ 직원의 업적연봉에 대한 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비율은 <별표 제1호>와 같다. <개정 2016. 5. 27., 2017. 9. 8., 2021. 12. 28.>
 - ④ <삭제 2017. 9. 8.>
- **제6조(경영평가 인센티브)** ①직원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7. 9. 8., 2021. 12. 28.>
 - ② 직원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개인성과평과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지급률 및 인원비율은 <별표 제3호>와 같다. 다만, 성과평가규칙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성과평

가 결과와 관계없이 최하위 평가등급(E)의 지급률을 적용한다.<개정 2017. 9. 8., 2021. 12. 28., 2023. 12. 28.>

제7조(평가등급별 인원비율) ①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인원비율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7. 9. 8.>

② <삭제 2021. 12. 28.>

제8조(근무성적평정)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평가규칙에 따른다.<개정 2016. 5. 27., 2017. 9. 8., 2021. 12. 28.>

부 칙 <2016.05.27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(기본연봉)는 2016년 개인성과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07.21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09.0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2.2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12.2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제1호> <개정 2016. 5. 27., 2017. 9. 8., 2021. 12. 28.>

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비율

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
차등지급률	132%	116%	100%	83%	66%
인원비율	10% 이상	20% 내외	40% 내외	20% 내외	10% 이상

<별표 제2호> <삭제 2021. 12. 28.>

<별표 제3호> <신설 2023.12.28.>

평가등급별 경영평가 인센티브 차등지급률 및 인원비율

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	E등급
차등지급률	132%	116%	100%	83%	66%	0%
인원비율	10% 이상	20% 내외	40% 내외	20% 내외	10% 이상	